

2010 동계(통산 8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실질적인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과 실천 전략

- 일시 : 2010. 12. 18(토) 15:00 - 20: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구) 배움터)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행 사 프 로 그 램

1부: 개회식 및 기조 발제

사회 : 김상돈(서울 상원초, 본 학회 사무국장)

- 개회선언 사회자
- 국민의례 다같이
- 개회 인사 허종렬(서울교대, 본 학회 회장)
- 축 사 원재천(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기조발제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 발표 : 김형성(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2부: 실질적인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과 실천 전략

사회 : 장원순(공주교대, 본 학회 학술이사)

- 주제발표 1 : 중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 발표 : 오동석(아주대), 이은주(서울 양서중), 최형규(수원 유신고),
 - 토론 : 구정화(경인교대), 서용선(의정부 총의중),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 주제발표 2 :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갈등 해결과 소통문화 만들기
 - 발표 : 이필우(마산 내서여고)
 - 토론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주선(광주 상일여고)
- 총평 이성훈(한국인권재단, 본회 부회장)

3부 : 폐회식

사회 : 김상돈(서울 상원초, 본 학회 사무국장)

- 공지사항 김상돈(서울 상원초, 본회 사무국장)
- 폐회선언 허종렬(서울교대, 본 학회장)
- * 송년의 밤 행사(장소: 제주본가) 다같이

목 차

【인사말씀】

인사말씀 허종렬

【기조발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김형성 (1)

【주제발표】

실질적인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과 실천 전략

[주제발표1] 중학교 인권교재 개발 과정 보고 오동석 (9)

[주제발표2] 중학교 인권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이은주 (21)

[주제발표3] 중학교 인권교육 교사용지도서 개발 원리와 실제 최형규 (45)

[주제발표4]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갈등 해결과 소통문화 만들기 이필우 (57)

인사말씀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실질적인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과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8차 학술발표회가 됩니다.

최근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및 교사 체벌 금지 조치에 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여건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인권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로 판단되며, 때마침 본 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중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수주 받아 수행하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갖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노력은 중요하며, 인권교육 연구 시범학교들의 다양한 실천 전략들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초 발제를 맡아 주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성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 발표회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8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이종렬** 드림

기조 발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기조 발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김형성(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인류사의 핵심가치로서의 인권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
- II.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
- III.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 IV. 맺는 말

I. 인류사의 핵심가치로서의 인권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던 불변의 가치는 인권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근대이후의 서양사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초기의 모습은 신분에서 인본으로의 이행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형태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점차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구체적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도 정부 수립 이후 인류사의 이러한 큰 흐름에 적극적인 보조를 맞추어 오기 시작한 것이 벌써 60년을 넘었다. 그동안 인권논의의 지평도 크게 넓혀져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초국가적이고 자연법적인 대 명제를 화두로 하여 경제적 생존의 문제와 쾌적한 환경을 기초로 하는 삶의 질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공동체의 확고한 이념적 기초로서 정착되어야 하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은 완성되어 가는 인권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II. 학교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인권교육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공적 생활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이 차이가 난다.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의 인권이 공권력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교육 영역에서의 인권은 인권교육 그 자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또래 집단의 사회는 또래들 사이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사인 상호간에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또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III.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이와 같은 학교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인권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인권인지, 어떻게 하면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타인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되는지, 어떤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침해된 권리는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구제 받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인권교육은 인권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막연한 인식만으로 목청껏 주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거꾸로 열악한 인권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신의 권리 주장이 타인의 권리와 상충하게 될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까지 자신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침해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어떻게 침해된 것인지 그리고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무엇이 인권인지를 모르고 인권을 찾고 향유하고자 한다면 우연이 아닌 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학교 안과 밖을 떠나 인권교육의 출발이요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권의 문제가 서구사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과 과거의 우리 인권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고사의 역사시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긴 하지만 홍익인간사상과 같은 훌륭한 인본주의적 이념체계가 확립되어 면면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정리도 부족할뿐더러 교육현실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잡아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2. 학교생활과 인권교육의 일체화

다음은 학교생활과 인권교육이 일체로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의 인권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교교육과 학교현실이 각각 따로 작동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인권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의미는 찾기 어렵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서 구성원들의 이중적 내지는 다중적 의식 구조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과 교육의 이원성은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바와 행동을 다르게 하여 이중인격자를 양성하는 첩경이 된다.

물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과 인권교육을 일체화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론적·논리적 인권보장과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 인권보장 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괴리가 있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교육현장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의 시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스럽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자유가 지나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는지도 유의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실질적 인권보장 사이의 괴리 이외에도 현실적인 다양한 교육여건이 야기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되지 않고서는 학교인권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장체험의 강조

그리고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현장체험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말과 글로 익히는 단계를 지나서 인권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현장을 방문한다는 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인권침해 내지는 구제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접하게 됨으로써 인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권을 만나게 된다. 가슴으로의 만남은 인권이 내게 있어서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서 또는 삶 그자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말하자면 인권의식이 체화된 이러한 개인들로 공동체가 구성이 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 학교·가정·사회의 연계교육

끝으로 학교 인권교육은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인권교육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리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과거와 달리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 내에서 잠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그야말로 알아야 할 지식의 일부를 전달하는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연계된 인권교육은 여러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전제는 가정과 사회에서 학교가 강조하는 바의 인권이 현실적으로 존중되는가의 문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형해화 될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취

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각자가 처해있는 가정환경은 크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지난한 문제이고 우리의 교육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해볼 때 결코 간단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IV. 맺는 말

결국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인권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생활의 현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이나 인권현실이 함께 보조를 맞출 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무리 학교가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바퀴를 굴리지 못하면 어렵고, 가정과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학교 인권교육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역시 우리가 원하는 인권사회로의 이행은 요원하게 된다. 최근 학교인권교육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적지 않다.

주제 발표 1



중학교 인권교재 개발 과정 보고



[주제 발표 1]

중학교 인권교재 개발 과정 보고

오 동 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여는 말
 - II. 교재개발 원칙과 자기평가
 - III. 교재개발에서 고려사항과 그 평가
 - IV. 닫는 말
- * 참고문헌

I. 여는 말

중학교 인권교재 연구를 계획하면서 ‘눈높이 인권교과서’를 첫 번째 개발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높이’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눈높이는 결국 보는 이의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연구진 내에서도 그랬지만 전문가 의견에서도 그 차이점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교의 현실 또한 어떻게 인권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주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인권교과서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아류처럼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입시과목이 아닌 이상 명목적인 수업이 될 위험성도 높아 보였고, 전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 스스로 흥미를 잃는 경우에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교과서’라는 틀 또한 ‘표준성’에 근접해야 한다는 점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재개발에 어려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중·고등학교 교사, 인권활동가, 법과 인권 교육 연구자, 헌법연구자 등은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전히 다듬는 작업은 진행 중이며, 이 자리 또한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어쩌면 한국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동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의 경우 청소년들이 인권에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권”을 말하지 않고 인권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겠다는 열정만큼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물이 목표와 열정에 한참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 반영할 수 없지만,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견은 연구책임자 오동석의 이메일(idonoh@gmail.com)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I. 교재개발 원칙과 자기평가

교재개발의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눈높이 인권교과서, 둘째, 입체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인권교과서, 셋째, 학교현장 중심의 인권교과서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목표인 눈높이 인권교과서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개념 및 용어를 중학생의 눈높이로 풀어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학교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중학생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놀이 삼아 인권을 얘기’하며 ‘중학생이 스스로의 인권생각을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학생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교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에게는 평소 인권에 다소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인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지도용 교재를 개발하고자 했다.

예컨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법률용어이긴 하지만 또한 그것을 언젠가는 알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설명도 없이 굳이 “천부 인권”, “헌법 소원”, “행정 심판”, “행정 재판”, “상소”¹⁾ 등의 용어를 중학교 교재에 그대로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비판으로부터 우리 연구진의 결과물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

1) 이 글에서는 중학교 사회 1(금성출판사)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재는 우연한 기회에 연구 과정 중에 얻게 된 것으로서 연구 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뿐이다. 혹여 저자나 출판사에 누가 되었다면 양해를 바랄 뿐이다.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인 입체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인권교과서는 사고의 실마리를 풀어내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권문제를 연관 짓는 일이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을 나눔으로써 인권 관련 교과목 수업이든 창의재량활동 수업이든 별도의 참고 및 활동 자료 없이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지구촌 공동생활까지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천부 인권으로서 인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 권리이다. 둘째, 권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자연권적 권리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 보편적 권리이다. 넷째,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적 권리이다.”

이러한 서술 또는 설명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감수성 또는 영감 또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법(특히 법조문) 중심의 인권교육에 대하여 발표자는 법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거부감이 있다. 인권의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를 고려하면 인권과 법은 긴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권은 끊임없이 법을 향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 추구하는 질서나 안정 등은 한국 사회에 너무 넘쳐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또한 우리 연구진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식이긴 하지만, 설명 위주의 서술에서 ‘얘기거리’를 만들어 인권을 말해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다만 그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의 과제가 ‘모델 개발’이라는 점에서 연구진의 무능력을 이유로 연구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었다. 다른 한편 연구진의 이런 연구경험은 향후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도 그랬다. 연구진으로서는 인권교재 개발 연구를 통하여 ‘살아 있는 인권공부’를 한 셈이었다. 다양한 전문능력을 가진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는 기회이기도 했으며, 이 또한 향후 인권교재 개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목표인 학교현장 중심의 인권교과서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때로 갈등하며 때로 협동하며 해결하는 일을 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학교생활

과 밀접한 인권 현안을 교육주체간의 협의와 참여로 해결해나가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콘텐츠를 포함하여 개발하되, 2009년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인권은 여전히 예민한 문제이다. 인권의 소재 또한 학교 또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다보면, ‘교과서’에 적합한 소재인지가 고민이었다. 연구진의 인권감수성 수준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인권침해적 표현이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III. 교재개발에서 고려사항과 그 평가

첫째, 교과서 구성의 본문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사례 중심으로 선정하고 중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렇다고 조금은 고민해야 할 내용이 전혀 없어서는 안되기에 다소 단원별 편차를 두었다.

둘째,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토론과 역할극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차시별로 주제와 밀접성이 있고 차시 간 중복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현실에서 교사 및 시간의 여건상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에 있다는 난관에 빠져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교과서의 활동은 탐구활동으로 구성하는데, 한 차시에 2-3개 정도로 배치한다. 각각의 활동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차이를 두어 구성한다. 탐구활동은 차시의 기본 활동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나 내용으로 구성하고 수업 진행 과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차시의 특성에 따라 탐구활동은 2개 내로 배치할 수 있다.

교사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는 연구진의 계획은 실제 대부분의 교사가 수업준비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만으로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단순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전히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다.

넷째, 학생들의 활동은 교과서로 충분하도록 구성한다. 교과서 외에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지 않도록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워크북 개념의 교과서로 제작한다. 시간별로 활동에 따라 학생활동용 자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아마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고려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기존에 각종 인권교육프로그램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도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수업 형태가 아니라 청소년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 교재를 감안한 측면도 있다.

다섯째, 각 차시별로 마지막 부분에는 각 교과별 인권 활동을 담아 전공에 따라 교사가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예시에서는 국어과의 경우이며, 수학, 영어, 사회, 음악, 미술, 기술, 가정, 체육, 도덕, 역사 등 가능한 모든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담아낸다.

이 부분 역시 애기거리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제대로 교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도서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본문에는 견주를 두고 견주에는 본문의 내용 중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담는다. 그 외에도 본문이나 주제와 관련된 통계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교재가 얘기 위주로 틀이 잡히면서 그리고 구성이 산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되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다지기”나 “읽기자료” 또는 “생각넓히기” 형태로 별도로 배치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소하려 하였다.

일곱째, 본문의 탐구활동이나 자료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만화나 삽화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면 차시별로 한 개 이상 들어가도록 하며 사용하는 사진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항은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 대개 사진자료 형태로만 반영이 되었다.

여덟째, 인권위원회 홈페이지나 법 교육 센터 등과 연결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미리 구축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안 드리는 사항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인권을 얘기할 수 있고, 친근한 수업자료를 확보하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홉째, 한 차시 분은 크게 학생활동-교사지도-실천활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생활동은 수업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지도는 주제와 활동에 대한 교사의 설명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활동은 앞의 두 과정을 종합하는 활동으로 현실에 적용 가능한 마무리 과정에 해당된다.

학생활동과 교사지도는 탐구활동으로 해소되었으며, 매 단원을 실천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열 번째, 연구계획서상으로는 16차시를 기준으로 교과서 구성을 하였다. 1-2차시는 인권에 대한 도입부분으로 인권의 의미와 감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3차시부터는 10차시까지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가정에서 학교, 사회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11, 12차시는 사이버 인권과 성폭력이라는 주제별 접근을, 마지막 13-16차시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결과물은 15개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주제별로 주제를 설정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하여 일정한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몇 개로 큰 주제로 묶었다.

제1부는 교과서 전체로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인권을 설명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담겨 있다. 명확하게 ‘이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개별 인권을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단원 인권은 과연 인권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2단원과 3단원은 인간의 존재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몸을 소재로 하여 단순히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른 개별 인권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인권이 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구성했다.

제2부는 개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으로서 4단원 사생활과 개인정보, 5단원 자기 결정, 6단원 생각과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3부는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으로서 7단원 교육과 문화, 8단원 노동, 9단원 가난의 문제를 다룬 인간다운 삶으로 구성하였다. 제4부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권의 영역으로서 10단원 여성 평등, 11단원 소수자 평등, 12단원 정치적 참여, 13단원 평화로운 삶으로 구성하였다.

제5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14단원에서는 인권 침해 구제방법을 다루면서 ‘연대’의 중요성을 포함했다. 15단원에서는 인권의 문제가 권력과의 관계, 특히 국가권력은 물론 경제적 권력과도 연관이 있음을 얘기해보고자

하였다. 15단원은 다소 중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 인권교재의 마지막은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그 이후로 이어져야 하는 점에서 새로운 고민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열한 번째, 교과서 말미에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주제를 몇 개 더 제시해 주고, 지도용교과서에 그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예컨대 형제자매, 부모, 친구, 선생님 등과의 갈등의 상황을 주고, 어떻게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그것을 평화와 전쟁의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권사고 증진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적 사고방식은 제시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이나 쉽지 않은 과제이다. 나름대로는 각 단원마다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었는지 또 그것이 바라는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대학생조차 이러한 사고를 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고등학교들은 물론 대학생들조차 외부에서 주어진 일정한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채찍질 당할 뿐, 자기성찰을 하거나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거나 실천을 통해 학습할 기회는 사실상 박탈당한 상황이다. 인권 교육에 앞서 교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연구진의 목표 및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연구진이 얼마나 그것을 성취하였는가는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 함은 적어도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권 존중과 인권적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넓은 의미로는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환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교과서라는 것으로 좁혀본다면, 이것은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이라 할 것이며,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인권에 대한 흥미, 사고와 토론, 참여, 경험과 공감들의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²⁾

2) 공일영, “개정 사회 교과서 안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2010.10.22, 145-146.

IV. 닫는 말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교육이 아니라 ‘배워서 익히는’ 학습이라는 말이 더 인권적이다. 교육학에서 학습은 “지식의 획득, 인식의 발전, 습관의 형성 따위를 목표로 하는 의식적 행동”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학습의 자유와 권리’가 배우는 이의 인권을 이름붙이기에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인권친화적 인권교재는 무엇일까? 첫째,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표를 벗어나 일상 생활에서 인권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머물지 않고 인권에 대한 시각과 공간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권은 정답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인권 공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위주 학습과 달라야 한다. 설령 인권 과목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인권 과목은 학습 부담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중학교 인권교재를 쓰면서 글쓴이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각 인권 주제별 얘기를 풀어나갔다. 연구원들이 전문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완성도에서 위험부담이 있지만, 학생들 입장을 생각하면 어려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프로그램이 지식 위주의 교사 지도 학습이었다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부분은 학생 혼자 읽으면서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하면 바람이다.

인권에 대하여 나름대로 체계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학생들에게 일정한 체계를 전제로 하여 인권을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개별 인권 개념 또는 일정한 접근방식으로서 인권의 분류가 오히려 인권 개념의 폐쇄성 또는 인권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접근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생각을 열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념이나 체계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하되, 다른 책도 보고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존의 내용은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려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만, 이미 굳어진 생각을 여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른보다 아이가 뛰어난 까닭은 그 때문일 것이다. 각 주제는 중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연구팀과 글쓴이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각 단원은 ‘생각열기’ 이후에 (1) 인권을 주제로 한 애깃거리(읽을거리) 두 개, (2) 각각에 대하여 학교 수업을 염두에 둔 탐구활동(실제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이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개를 병용하여 진행), (3) ‘기초다지기’와 ‘생각넓히기’ 그리고 ‘실천활동’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 단원은 글쓴이들이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단원별마다 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쉽고 재미있게 인권 얘기를 풀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아직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다양한 독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 주제 정도라도 관심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독자가 있다면 성공한 게 아닐까 싶다. 아무쪼록 표현 하나하나까지 지적해준다면 연구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공일영, “개정 사회 교과서 안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2010.10.22, 129-151.
서태열 외 9인, 중학교 사회 1, 금성출판사, 2010.

주제 발표 2



중학교 인권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주제 발표 2]

중학교 인권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이 은 주 (서울 양서중 교사)

- I. 서론
- II. 교과서 개발 원리
- III. 실제 구성안
- I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올 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체벌 금지를 지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의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들의 노력의 결과가 명시화된 것이며 학생 인권 보장이 제도화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증폭 되고 있으며 최근 학생교사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으로까지 보여 지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찬 반 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 이것은 학생은 물론 교육관련 제당 사자들에게 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학생 조례 제정과 체벌 금지 조치는 학교 인권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사건들이라 생각된다.

학교 교육의 목표를 민주 시민의 양성에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으로 '인권'을 보았을 때, 각 교과 교육을

비롯한 공식적 영역의 교육과정이나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학생 활동, 교칙, 학교문화 등이 인권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인권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사회과 교육은 이러한 시민 교육 중핵 교과로서의 위치가 있으며 인권 교육에서도 같은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권’ 단원이 법 단원과 연결되어 개별 단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에 따라 집필된 7학년, 10학년 교과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교과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가 가지는 한계는 여전히 보인다. 7학년의 경우엔 한 개 소단원이 인권 단원인데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인권에 대해서조차 다루기 어려워 보인다. 10학년의 경우는 인권이 법의 목적으로서 소개되어있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쟁점토론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인권에 대한 학습자의 기초적인 이해가 없다면 수업하기에 무리가 있다. 인권 교육은 가치와 태도, 참여 영역으로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런 영역으로 접근하기에는 7학년, 10학년 교과서 모두 커다란 한계가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교사의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교실에서의 인권 수업은 교과서에 제시된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칠 것이며 학생들에게 인권은 하나의 암기해야할 지식이 되고 그렇게 지식 영역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사회과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타 교과나 기타 교육과정이 모두 인권 교육과 관계되어 있고 결국 인권 교육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여기서 인권 교과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은 교육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재량활동 시간으로 인권 교육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인정 교과서 형태의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인권 교육을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과서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인권의 가치와 태도를 강화시키는 학교의 절차와 문화라고 생각된다. 가장 마지막 요소는 한 번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교재와 교사의 문제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교과서의 사용자이자 개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에게는 적극적인 수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결국 잘 짜여진 교과서로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차이가 인권 교육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수업시간에 사용할 만한 인권 교과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량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교사라도 최소한의 인권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

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권 교과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권 교과용 도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진들은 먼저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천해야 할 인권 교육의 주제들을 15가지로 선정하였다.³⁾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하고, 가치와 태도, 참여의 영역 중심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용 도서를 구성해보았다. 본문에서는 교과용 도서가 어떠한 원리로 개발되었는지 살펴보고, 개발 원리를 담고 있는 교과용 도서모델은 어떠한지 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과서 개발 원리

1.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

교과서 개발은 인권 교육의 기본 방향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즉 교과서는 인권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하게 할 뿐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 능력과 인권 옹호의 가치관을 함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교과서를 통한 교육활동이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의 인권 존중의 과정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과서가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교과서로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청소년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교육의 소재를 찾고, 권리 등의 인권 교육의 요소를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교과서의 핵심이 되도록 구성했다.

2. 내용 구성 및 조직의 원리

먼저 연구진들이 선정한 15가지 인권 교육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부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제4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권의 영역
1. 인권 2. 생명과 인권 3. 몸과 인권	10. 여성과 평등 11. 소수자 평등 12. 정치적 참여 13. 평화로운 삶
제2부 개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	

3)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동석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서 다루어진다.

4. 사생활과 개인 정보	제5부 인권 보장, 어떻게?
5. 자기 결정	14. 인권 침해 어떻게 할까?
6. 생각과 표현	15. 권력과 인권은 어떤 관계일까?
제3부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	
7. 교육과 문화	
8. 노동	
9. 인간다운 삶	

위의 각 인권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권 교육의 요소와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조직되었다.

가.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권 교육에 있어서 자신들이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다양한 권리들이 암기해야 할 지식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또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생활에서 겪을 만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또한 이야기 속에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상황과 인권 옹호를 위한 노력들이 담겨져 있어 본문 내용을 읽고 난 뒤 이것들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생 활동들도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제시하여 인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했으며, 생활 영역 내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나. 어느 교사라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인권 교과서가 학교 인권교육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인권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 뿐 만 아니라 준비도가 낮은 교사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연구진들은 실제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2~3차시 분량으로 교재를 구성했고, 한 차시 분량으로 수업이 가능하지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 확인했다.

<주제별 단원구성>

	본문	활동
1차시	이야기 하나 + 확인하기 + 기초다지기	활동하기 1
2차시	이야기 둘 + 확인하기 + 기초다지기	활동하기 2
3차시 (선택활동)	읽기자료, 더 생각해보기, 실천 활동	

앞에서도 언급했듯 본문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이야기 형식은 학생들은 물론 인권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들에게도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읽고 ‘확인하기’를 학생들과 함께 하다보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초다지기’는 지식 영역으로 인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어 본문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유용한 부분이다.

활동하기 부분은 20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이 토론, 발표, 역할극, 그리기나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시간의 제한과 진행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모둠별로의 토의하여 발표하는 형식의 활동이 주가 되도록 했다.

다. 계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계열화의 원리를 반영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의 편성 원리로 제시되는 계속성의 원리, 계열화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를 반영하였다. 계속성의 원리란 ‘핵심적인 내용이나 주제가 일회적 소개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연구진들은 15개 주제로 인권 교육 영역을 나누었으나 자유와 평등, 차별 문제, 소수자 인권, 연대, 등의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전 단원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구성 했다. 계열화의 원리란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순서를 맞추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별 단원 구성에 있어서 본문의 이야기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학교, 지역 사회의 인권 문제로 확장해서 제시하여 인권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히려 했다. 통합성의 원리란 학습되는 내용이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관련성을 갖고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5개의 주제별로 강조되고 인권 교육의 요소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여 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에서 서로 관련성을 갖고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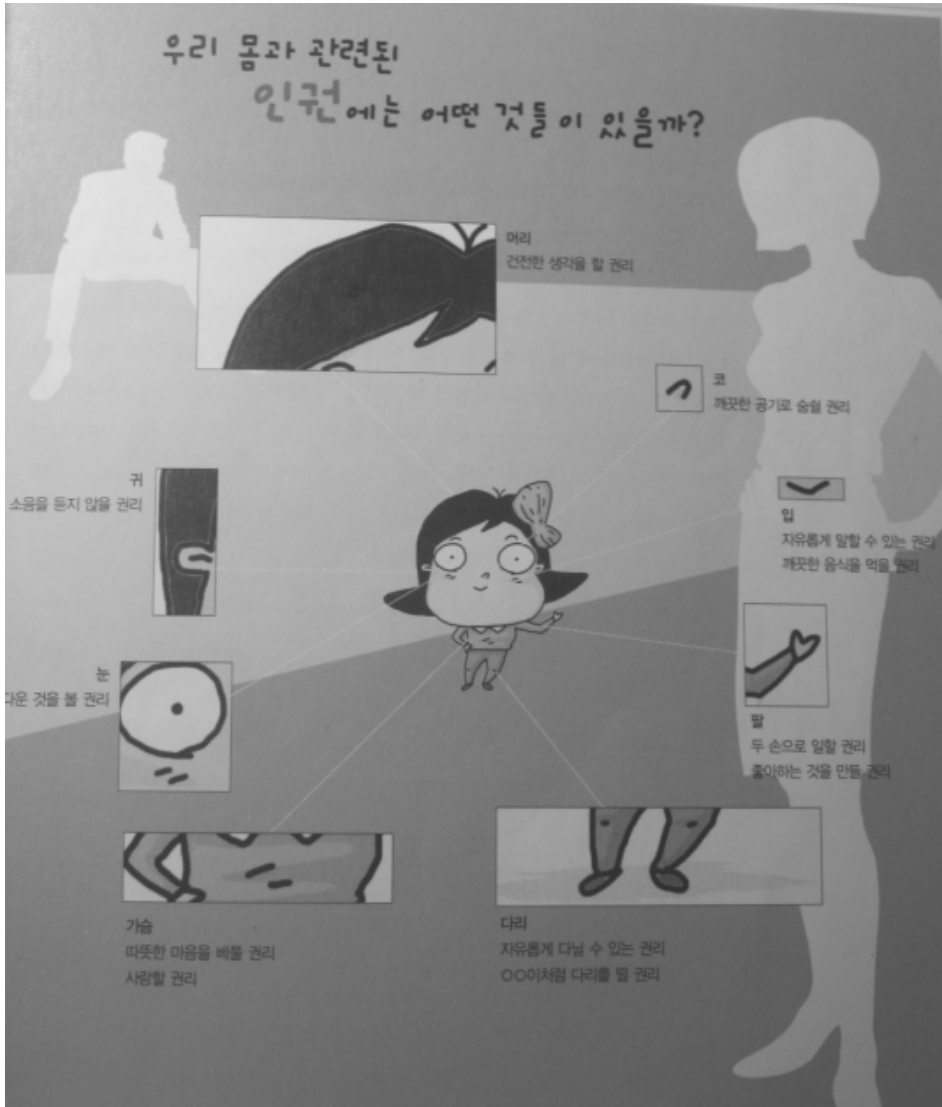
라. 인권 친화적 행위를 학교나 지역 사회 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한다.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 인권 교육의 목표는 결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인권 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나 실천 방법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고 일상 생활에서 인권 친화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행동하고 실천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기에 체험했던 인권 친화적 행동들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참여 활동은 한 두 번일지라도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는 준비나 실천하는데 수업 시간외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 활동 부분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인권 교육의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Ⅲ. 실제 구성안

교과서 구성 원리에 따라 만들어 본 실제 교과서의 사례이다.

3 몸과 인권



개인의 신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야기 하나 : 내 몸에 자유가 있어요

게토가 뭐예요

서현이는 불만이 가득해서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중간고사여서 꼼짝 말고 공부하라는 엄마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시험은 추석 끝나고 아니면 어린이날 끝나고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TV 소리, 가족들이 웃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니 큰 언니가 반갑게 서현이를 부릅니다.

“어 서현이 있었어? 이리 와서 TV 같이 보자. 공부는 나중에 해. 명절인데”

이제 직장인이된 큰 언니의 말에는 사실 엄마도 꼼짝 못합니다. 서현이는 냉큼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TV에선 음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일본에 사는 '우토로'라는 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김치, 잡채, 전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우토로가 어디데? 한국 사람들이라던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김치도 잘 모르네”

“음.. 일제때 일본에서 비행장을 만든다고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갔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토로란 곳에서 모여서 살게 했어. 그런데 해방된 후에 우토로는 일본 사회와 고립되어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 그리고 지금와서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거야. 우토로란 일종의 게토였지” 역시 언니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게토? 게토는 또 뭘까요?

“게토는 또 뭐야?”

“음....게토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의 강제 거주 지역을 말하는데, 유대인 게토가 유명해. 너도 알거 같은데... 독일이 유대인들을 탄압하면서 유대인 거주 지역을 만들고서는 그 곳에 유대인들을 살게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어. 그 거주 지역을 게토라고 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들어본 것도 같은데 게토와 다른 거야?”

“독일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게토에 살게 하면서 수시로 검문하고 필요하면

테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냈어.”

“유대인들은 모두 게토에 갇혔어?”

“그렇지는 않지만 독일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지냈지. 안네 프랑크 알지? 안네는 게토에 갇히지 않고 폴란드 마을에서 숨어지냈잖아. 그러다가 수용소로 끌려갔지.”

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현!! 이제 그만 들어가! 이번에도 수학점수 그렇게 나오면 알지?”

“언니. 내 방이 바로 게토야.”. 나를 구해줘하는 표정으로 언니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보지만 초강력 레이저라도 나올 것 같은 엄마의 눈빛에 항복하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몸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서현이는 ‘안네의 일기’ 책을 꺼냈습니다. ‘몇 년을 숨어지내다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게토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감시를 받으며 숨죽이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 서현이는 자신이 게토에 갇혀 지내면서 건물 너머 자유의 마을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가두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강제로 빼앗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현이도 갑자기 지난주 종례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짝인 은혁이가 자꾸 지우개를 잘라서 서현이에게 던지자 서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은혁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파당 소리가 나게 은혁이가 넘어지자 주변 친구들이 킁킁 웃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김서현이 저 밀었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아픈 흉내를 내면서 서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예요. 은혁이가 지우개를 먼저 던져서요....”

결국 선생님께서는 둘 다 교무실에 있는 ‘생각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30분 넘게 꼼짝없이 앉아있고 나서 은혁이와 서로 사과하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마음은 별떡 일어나 교무실 문을 힘껏 열고 나가고 있었지요. 30분은 참 길고 힘들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에요.

서현이는 ‘생각의자’에 앉아있던 30분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까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싸운 벌이였고 지금도 시험공부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말입니다. 학교 교칙이나 엄마 말씀이건 둘 다 억지로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동의 자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지당한다거나 누구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억압당한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자’에 앉아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어쨌든 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함부로 체포하거나 가둬둘 수 없다고 배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범인을 잡고 수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고 행동할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현이는 방 안에 있는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얼굴도 잘 살펴보고 손과 발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는 몸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 나에게 생명을 준 인연들과도 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이런 나의 몸은 너무 소중한거야. 누구도 함부로 내 몸이 지닌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지’

서현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자유가 보장된다면 책임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니까요.

“엄마.. 앞으로 한 시간 언니랑 더 놀 거예요. 그리고 시험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 확인합시다.>

1. 계도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일까요?
2. 서현이는 왜 ‘생각 의자’가 벌이 된다고 생각했나요?
3. 경찰에서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신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아래 빈 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신체의 자유란 _____ 다.
5.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지 생각해 보세요.

< 기초다지기 >

<이것만은 꼭.. >

신체의 자유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를 구속당하거나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장의 인권 카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림으로>

<찾아보기>

1. 헌법에서는 :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



<제5조>

<제9조>

<제12조>

활동하기 하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자료1> 2001년 9.11 테러 이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때 잡아들인 사람들을 가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과관타나모 수용소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테러리스트 감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쿠바 근처의 외딴 곳에 위치시킨 뒤 기본적 법적 절차조차 없이 사람들을 구금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감된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평범한 아프카니스탄 사람들도 상당 수 갈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08년 발간된 미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은 이 곳 수용자들에 대해 잔혹한 고문 기술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 2> 고등학교 2학년인 A는 일요일 저녁에 운동을 마치고 밤 11시 30분 쯤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하 차도면을 지나가던 112 순찰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A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A는 ‘왜 그러냐’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강제로 A를 타에 밀어 넣고 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에 와서 경찰들은 A를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A가 계속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자막을 강요했다. A에게 집에 전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전화를 못하게 했다. 이후에 경찰은 A의 잘못을 찾지 못하자 ‘너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 는 식으로 말하고 돌려보냈다.

1. 자료 1>과 자료 2>의 수용소에 갇힌 수감자나 고등학교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2. 자료 1> 과 자료2>에서 인권 침해 사항(인권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시다.

<자료1>	<자료2>

3.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내용에 대한 카드입니다. 2번에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어떤 카드가 쓰여야 하는지 알아보시다.

법원에서 죄가 있다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가두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에 따르지 않는 형사처벌(범죄에 따른 형벌)은 안 된다.	누군가를 잡아갈때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어야 해요.	사람을 가두고 수사할지, 가두지 않고 수사할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	-----------------------------	----------------------------------	---------------------------------	---

이야기 둘 : 사회가 지켜줘야 할 몸에 대한 권리

사람에게 불친절한 도로

월요일 아침, 등굣길에 서현이는 학교로 이어진 보도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제 서현이는 이모를 대신해서 조카를 봐주기로 했었습니다. 3살짜리 승규를 유모차에 태우고 학교 근처 놀이터로 가려는데 여간 애를 먹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인도가 끊어져 있는데 보도턱이 너무 높아서 유모차를 밀고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문구 앞에는 인도인데도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간신히 유모차를 끌고 지나쳐왔고 큰 길가가 아닌 슈퍼 앞에서 부터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어서 어린이를 데리고 걷기에는 위험했습니다. 문구점 앞에서는 “사람이 먼저야, 차가 먼저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한 유모차 끌기도 이렇게 힘든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인도 위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신체 장애인들에게 도로는 참 불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신체 모양이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불편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몸에 대한 배려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이네반 친구들도 얼굴이나 몸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그 기능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현이는 은비보다 글씨를 잘 쓰고 은비는 서현이보다 달리기를 잘 합니다. 용우는 시력이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을 쓰지만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노래를 들으면 바로 피아노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우가 실력 발휘라도 하는 날에는 서현이네 반 친구들 모두 와~ 하고 부러워합니다. 집안 식구들도 닮은 듯 하지만 모두 다릅니다. 동생 서진이는 왼손잡이고 서현이는 오른손 잡이입니다. 서진이가 왼손으로 가위질을 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누구나 꼭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이들이 다

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리를 걷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점자로 된 책이 많지 않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서현이는 몸의 모양과 기능이 다르더라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권리 같은 몸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서로 다른 몸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체육대회 예선전이 있는 즐거운 체육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피구 반대항이 끝나고 남학생들의 축구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한참 응원 하고 있는데 용재가 찬 볼을 인규가 머리로 받다가 그만 골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웃었는데 인규가 꼼짝을 안합니다. 얼굴과 머리근처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체육선생님이 인규를 데리고 양호실로 갔는데 종례시간까지 인규는 교실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인규의 얼굴옆이 찢어져서 봉합했고 아무래도 인규의 광대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치료비는 누가 대요? 인규 병원에 오래있어야 되요?” 눈치 없는 용재가 비용부터 물어봅니다.

“용재야. 친구 안부부터 좀 물어봐야지. 아마 ‘학교안전공제회’ 라는 곳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꺼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안전보험’이 생겨서 예전보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고 들었으니까.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학교에서 할 일 중 큰일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는 일이니까. 인규가 더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을 꺼다.”

서현이는 선생님 말씀에 인규 상처가 잘 아물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월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도 보장해주세요.

학교가 끝나 집 로 가는 길에 수영이에게 오늘 체육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해야 할 제일 큰 일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시험이 우리 건강을 제일 해치고 있지. 아 괴롭다. 조금 있으면 또 중간고사야“ 서현이의 푸념에 수영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건강이 제일이다. 하시면서도 수업시간에 누가 코피라도 흘려봐. 애들은 코꿨다고 막 놀리는데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가 그러면 밤샘 공부했다고 모두 본받으라고 칭찬하시잖아”

“선생님만 그러냐. 나도 수지를 독하다고 하면서도 은근 부러워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잠과 휴식도 꼭 필요한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는데 말이지. 공부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오호~~ 김수영. 그런 것도 알아?”

“전에 아빠랑 전태일 기념관 갔었는데 그 때 알려주셨어.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건 일의 능률을 올리고 단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어. 일하는 시간을 과하지 않게 정해서 충분히 쉴 수 있고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이게 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지.”

수영이는 V자를 그리면서 씩 웃었습니다. 서현이는 박수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우리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버거운 학습량을 내려놓을 권리와 쉴 수 있는 권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급식도 우리 건강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는 급식비도 싸고 맛도 좋았는데....”

“지금은 맛없다는 말? 내가 보니까 수영이 너 밥도 많이 먹던데?”

“음~~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너무 슬픈 말이다.”

“우리 학교 졸업생인 언니가 그러는데 학교 급식이 급식업체에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바뀌면서 밥이 많이 좋아졌대. 좋은 재료에다가 영양도 균형 있고..”

“맞어. 우리 시의 학교 급식은 모두 직영으로 해야한다고 했어. 몇 년 전에 조례로 정해졌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지?”

“응. 그런데도 일부 학교는 아직도 급식을 직영으로 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잖아”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 건강인데 말이지.... 너무 하네” 수영이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수영아. 무리하게 다이어트나 하지 마세요~~”

수영이랑 유쾌한 농담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서현이는 오늘도 블로그에 한 줄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지켜줘야 할 부분은 참 많은 것 같다.”

< 확인합시다.>

1. 일요일 서현이는 도로를 걸으며 무엇을 생각했나요?
2. ‘서로 다른 몸에 대한 배려’란 무슨 의미일까요?
3.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어떤 보살핌을 받을 수 있나요?
4.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휴식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5. 학교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몸에 대한 권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 기초다지기 >

< 이 장의 인권 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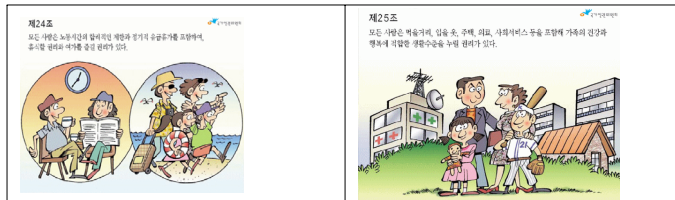
건강하게 살 권리
<그림으로>

< 이것만은 꼭.. >

서로 다른 몸에 대한 배려...
누구라도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등의 몸이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새와 기능을 갖고 있는 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몸에 대한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학교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질병에 대한 보살핌 등이 필요합니다.

< 찾아보기 >



1.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

<제24조>

<제25조>

2.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게 먹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활동하기 들

: 내 몸에 부족한 2%의 권리를 찾아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학교 시설 및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번호	문항	Y(yes)/ N(no)
1	책상과 의자는 내 몸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가?	
2	정수기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가?	
3	겨울에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는가?	
4	화장실에 비누와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가?	
5	사물함의 크기는 물건을 넣고 다니기에 적당한가?	
6	체육복을 갈아입을 탈의실은 있는가?	
7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있는가?	
8	급식은 학교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9	점심을 먹을 시간은 충분한가?	
10	운동장에 체육시설은 잘 마련되어 있는가?	
11	방과 후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12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공부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가?	

1) 아래 질문에 따라 우리 학교를 살펴보고 Y, N으로 표시해봅시다.

2) 위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 학교의 시설 및 환경을 인권의 측면에서 평가해봅시다.

결과	Y : ()개 / N : ()개
평가	잘된 점과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적어봅시다.

3) 위 문항 외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보장해야 할 학교 시설 및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지 짝과 토의하여 적어보세요.

읽기자료1 > 미란다의 원칙

(이야기 하나 관련)

“당신을 OO협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간에서 피의자(죄가 있다고 짐작되는 사람)를 체포할 때 꼭 해 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1963년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청년이 납치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최고 30년 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지만 곧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반드시 그 권리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미란다의 이름을 빌려 이 원칙을 ‘미란다의 원칙’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가두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기자료2 > 수면권 보장과 관련된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심의 요구

(이야기 둘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조례안을 4월 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올 3월 시행할 계획으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한 상태이다.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심야교습 제한에 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야간교습을 제한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고 하면서 도교육위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장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4일 경인매일 >

위 기사는 심야교습을 제한해서 수면권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이유로 수면 시간의 부족이 있다. 학습능률과 상관없이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니 잠도 부족하고 수면의 질도 낮아서 자고 일어나고 개운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신경도 예민해지고 긴장도 잘 풀리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하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휴식으로 풀지 않으면 숨막히는 일상이 계속 될 수 있다. 수면과 휴식은 청소년에게 절실하며 이 또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

생각 넓히기 체벌 금지 반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10월 5일 공포되어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지만 이것이 법률로 보장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만들어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 최근 이슈가 된 ‘체벌’에 대한 질문에 한 교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 교원단체에서는 “학교 규칙에서 정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체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교사의 학생 포기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체벌은 교사의 ‘폭력적 권위’를 내세울 뿐, 지금 교육 현장에 절실한 ‘도덕적 권위’를 세우진 못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랑의 때’는 환상일 수 있어요. 교사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때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라고 말하며 체벌을 행사할 때, 요즘 학생들은 더이상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체벌’ 또한 존재하기 힘듭니다. ‘지각하면 손바닥 3대, 숙제 안 해 오면 손바닥 1대’ 등의 규칙이 나름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교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결국 학생들은 체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응당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사의 심기를 잘못 건드린 대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체벌은 ‘학교폭력’을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동료나 후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훈계할 때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잡기 위해 때리지 않느냐?”이거든요. 교사가 학생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자신들도 동료나 후배 등이 잘못했을 때 손 좀 봐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뜻인거죠. 이처럼 체벌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이젠 학생지도 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기를 누르기 위해 손쉽게 사용했던 체벌 대신, 문제의 근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1. 위의 답변처럼 다음 질문에 대한 “아니야”의 이유를 친구와 함께 상의하여

<p>Q. 반에서 너무 장난치거나 떠드는 아이들이 체벌을 통해서 장난이 줄어들거나 안 떠든다면 다수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이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Q. 우리나라에서 아직 체벌만큼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없기 때문에 큰 고통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체벌한다면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아니야 =></p>	<p>아니야=></p>

적어봅시다.

실천활동

‘걷고 싶은 우리 동네 만들기’

지역을 살펴보면서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떨까요?

<준비> 질문지, 모조지(전지), 매직, 색연필,

<진행> ① 4인 1모듬을 만들고 모듬별로 준비물을 배부한다.

② 동네 지도를 그리고 질문지에 맞춰 해당 지역에 표시하게 한다.

③ 다른 모듬원들에게 발표하게 한다.

④ 개선이 되도록 구청 등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청원한다.

*질문지 예시

1. 도로에는 인도가 잘 갖추어져 있나요?
2. 인도위에 시설물이나 인도 위 주차로 인해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3.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골목은 없나요?
4. 건널목(도로를)을 시각장애인이 건너게 될 때 어려움은 없나요?
5. 스쿨존 지역이 잘 표시되어 있고 잘 지켜지고 있나요?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은 도로, 인도> <보행권이 잘 보장된 인도>

<동네 지도 >

IV. 결론

학교 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권 교과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도 개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마련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실현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정 교과서 형태로 교재가 만들어져서 재량 시간에 활용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인 셈이다.

인정 교과서 특성상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 과정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 교사모임 등에서 학교 인권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물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 학교 인권 교육을 대상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학교 인권 교육의 방향이나 실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면 합의된 기준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사실 이번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가 인권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연구진들도 확신이 없다. 추후에 더 연구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학습자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교사모임의 교재나 다른 나라의 교과서의 구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었어야 했다. 개발된 모든 단원을 실제 수업으로 시연해보고 보완하는 일도 필요했다. 여러 가지 미진한 연구였지만 이번 연구가 학교 인권 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학교 인권 교육 교과용 도서의 제작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김윤나(200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방안, 3(2),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인권고등한무관실(2007),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제 발표 3



중학교 인권교육 교사용지도서의
개발 원리와 실제



[주제 발표 3]

중학교 인권교육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 원리와 실제

최 형 규 (수원 유신고 교사)

- I. 서론
- II.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 원리
- III. 지도서 구성의 실제
- I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의 인권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실은 학교 현장의 암울한 인권침해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학교는 인권 보장과 교육의 전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이나 사회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인권 침해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과 교재를 가지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있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이하 교과용 모델)도 이런 시대적 요청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 개발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쓰는 교과서를 제

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토대로 교사용 지도서가 만들어지는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들의 주된 교재를 말하고, 지도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는 다른 원리와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이번 ‘교과 모델’의 교사용 지도서에 담겨있는 개발 원리와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¹⁾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이론적 검토 및 사전 연구 등의 이론적 접근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실제로 제작한 교사용 지도서의 틀과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II.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 원리

1. 교과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원하는 지도서

이번에 개발한 교과모델은 기존의 교과서와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의 대부분 교과서가 개념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교과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학생들 ‘활동’이 추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것을 ‘활동’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교사는 활동의 촉진자와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²⁾ 본 지도서는 ‘교과모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단원마다 제시된 두 가지 이야기의 의미와 함께 이해를 돕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가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활동 모두 활동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1) 교과서가 최종 완성되기 전이어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서 또한 완성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2)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친화적인 수업 분위기고, 이를 위해 토론이나 모둠 활동 등의 학습자 중심의 그리고 소통 중심의 수업이 요구된다. 여기서 교사는 주로 촉진자와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도서는 <그림1>과 같이 우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약간 축소된 상태로 지도서에 실리게 되는데(가운데 굵은 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 이는 교사의 수업 지도를 용이하게 위한 것이며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도서의 총론은 인권교육의 목표와 성격, 구성 원칙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각론에서 각 단원별 필요한 사항을 교과서 구조에 맞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도서의 구조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제작되는 지도서의 기본 성격에 충실한 형태이다.

다만 ‘교과모델’에 의한 학생용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야기 식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지원과 보완의 개념으로서의 지도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지도서는 이런 점에 충실하기 위해 각 이야기마다 그 취지와 설명 및 지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은 교사가 이야기를 이해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관련된 자료와 사진, 도표, 이론 등을 함께 실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활동하기’의 경우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나, 교사의 지도가 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도 방법과 예시를 친절하게 해주고 있으며, 쉽게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과모델’이 인권교육을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이 아닌 문제제기와 함께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서는 그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인권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 관련 이론이나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각 단원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도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특히 ‘교과모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야기 식의 본문과 이와 관련된 학생 활동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예시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예시에 불과하다. 여기서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교과모델’의 교과서는 한 단원의 내용이 한 차시의 수업 분량을 넘는다. 따라서 한 단원을 몇 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단원과 연계해 한 차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즉, 수업은 교사의 선택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도서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동 마다 예시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된 단원과 페이지를 제시하여 수업 시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열린 구조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서에 그 활용을 도울 수 있는 지도 방향이나 방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 전 미리 지도서를 통해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전공이나 스타일에 맞는 유연한 지도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3. 인권 친화적 교수-학습을 위한 지도서

‘교과모델’이 인권교육 교재임을 고려한다면 지도서의 인권 친화적 성격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反)인권적인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서는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교사의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지도서는 이런 측면에서의 교사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학교 교실 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과 요소,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수업 시 교사가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오히려 반인권적 말이나 행동으로 점철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서를 구성하였다. 학교 인권교육과정의 원리에 충실한 지도서를 개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인권 감수성과 인권친화적인 실천까지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인권교육은 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이 일부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 되어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학생 인권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도서는 교사의 인권교육도 함께 고민하였다. 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교사를 기준으로 지도서를 제작하고 학생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인권 관련 역사와 사건, 인물의 소개는 물론, 인권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도 포함하고 있다.

III. 지도서 구성의 실제

1. 총론

총론은 학교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과 인권교육의 성격, 목표, 교수 방법, 교과서 구성의 원칙, 연간 수업지도계획 등을 담고 있다. 학교인권교육과정의 목표 설정과 내용 선정의 원리, 교수-학습의 원리 등을 토대로 교과서와 지도서가 제작되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³⁾ 그리고 이에 따른 인권교육의 성격과 추구하는 지향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인권교육의 교수 방법에 대한 안내도 연간수업계획의 대체적인 틀과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과모델’의 교과서가 갖는 구성 원리와 목표, 특징, 그리고 실제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다.

2. 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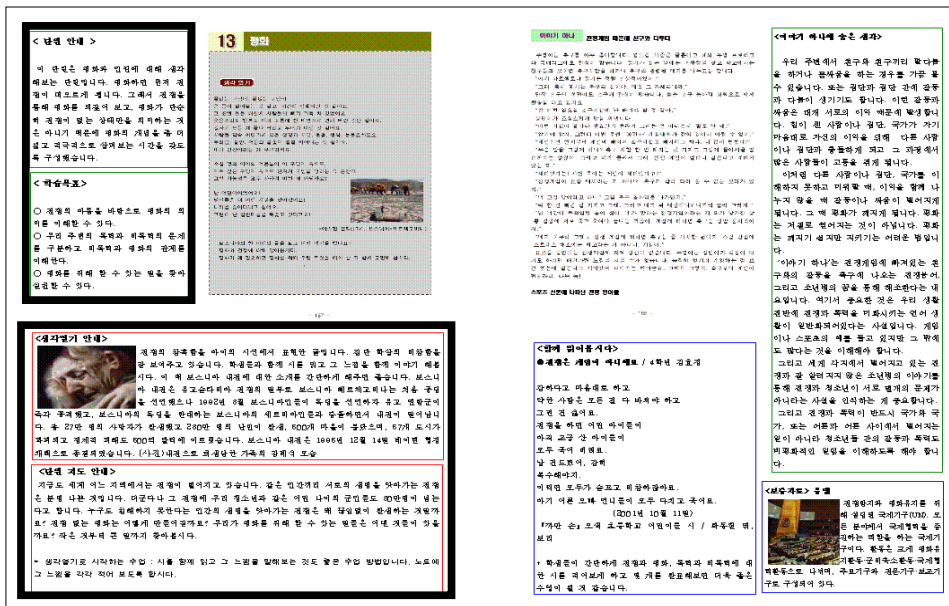
1) 단원의 설정 이유와 학습목표

각 단원마다 <그림2>의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그 단원을 설정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원의 지향점과 더불어 단원의 전

3) 학교 인권교육과정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를 토대로 고민하였다.

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교사가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생각열기’에 대한 안내와 구체적인 사례, 지도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모델'의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접근을 위해서였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단원별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을 지도서에 제시해 놓았다. 교과서는 이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그림 2> 지도서의 단원 안내와 학습목표

2) 교수-학습 지도

교사는 단원별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단원과 단원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교사가 상황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수업이 가능하지만, 인권교육은 특히 인권친화적인 수업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단원별로 예시 수업 지도안을 제공함은 물론 반인권적 수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 친화적 교수 방법에 대한 지도 방법 등을 ‘활동안내’와



<그림 4> 학습 보조 자료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모델’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는 지도서 제작의 토대가 되는 교과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한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그리고 지도서는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교사가 쉽게 접근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인권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한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인권 교과서만으로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도서는 교과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일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런 지도서 개발 원리에 의해 지도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교사가 단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도안을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교사의 선택과 자율성,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획일적인 주입식 지도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고민과 경험 및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인권 친화적인 지도서의 특색을 갖는다.

지도서의 구성은 총론과 각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총론에서는 인권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교육 과정과 목표, 교수-학습의 일반적인 논의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실제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학습 목표와 방향, 교수 학습의 구체적인 예시, 지도 방법과 유의 사항, 그리고 각종 참고 자료 등4)을 담아내고 있다.

‘경기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최근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획일적인 통제 중심의 학교 문화 속에서 사장되어가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인권교과서와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에 의해 더욱 활발해지고 인권 보호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한 ‘교과모델’은 매우 유의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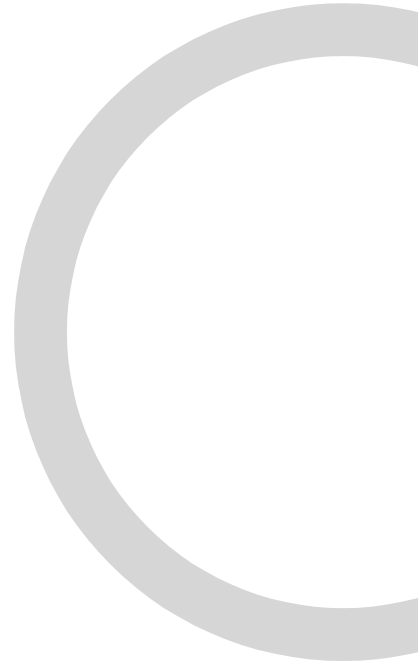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오애희(2005). 일본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럽평의회(2009). 청소년인권교육지침서 나침반 · COMPASS.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윤여탁 외(2010). 교사용 지도서 국어. 서울:미래 엔 컬처그룹
- 최현섭 외(2007). 교사용 지도서 사회·문화. 서울: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한홍구 외(2003).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연구. 서울: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4) 지도서에는 평가 부분이 빠져있는데, 인권교육과 관련된 학생 평가는 매우 어렵고 민감한 일이다. 각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 위주의 객관적인 평가는 인권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본 지도서에서는 평가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인권교육의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주제 발표 4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갈등해결과
소통문화 만들기



[주제 발표 4]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갈등해결과 소통문화 만들기

이 필 우(마산 내서여고 교사)

- I. 들어가며
- II.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
- III. 마치면서
- * 참고자료

I. 들어가며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 사회 상황과 무관하게 존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와 요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원이 갈등의 주요한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왕따, 폭력 등 학생 사이의 갈등은 이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갈등’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도전이고 선택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의 갈등과 갈등해결의 문화는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의 현실적 조건

과 위상 속에서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과 의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학생회는 그런 자유로운 의견들과 요구를 귀 기울여 듣는 곳이다. 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학교에 실현하기 위한 자치적인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이며, 학생들의 창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자치활동¹⁾을 펼치는 곳이다. 또한 불편·부당한 일을 생겼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에 학생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나아가 이웃 학생회와 지역 사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체득하게 되고, 규정과 원칙에 따르되 상대를 존중하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인권의식도 함양하게 된다.

학생인권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생활 속에서 인권친화적 환경을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아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은 이러한 학생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비교과 영역 중, 공식적인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웃 학교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1)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은 학급,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 학생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중심의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개별적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표체인 학생회의 활동을 말한다(교육법 제17조에 “학생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학습활동, 학생회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을 키워 나가며 고유한 자기문화를 표현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삶을 체득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교육부, 초·중등교육법령의 이해, 1988).

II.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

1. 간부리더십 연수

학생 간부가 지녀야 할 자세, 학생회 조직과 활동의 범위, 학생, 학급회의 진행 방법, 학생회 활동 연간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연수함으로써 학생회 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학생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긍심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실천사례

(1) 학생자치활동 (예)

급식문제를 개선, 명찰·교복·체육복 디자인 변경 등을 위한 활동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활동

학생자치활동(대의원회 활동, 교내체육대회, 학교급식협의회, 학생축제 준비위원회, 동아리활동, 학생 문화 복지사업 등)

학생인권신장 활동

캠페인 활동 (학교폭력 없애기, 금연 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

(2) 리더의 조건과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자세- 학생 간부리더십 연수(생략)

(3) 학생회 조직

※ 학생회 조직별 기능 및 역할

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의원회와 학급회는 의결기구이며, 회장단 학생회운영위원회(임원회), 학급 정부회장은 집행기구이며, 자문 위원회는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4) 학생(학급)회의

학생(학급)회의 진행 모형

순서	단계	진행구조	진행요령
1	개회 선언	“지금부터 제()회 학생대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① 사회: 사회는 부의장이 맡아서 진행하며, 주로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② 개회 선언: 의장,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③ 개회 전에 각종 준비물을 확인한다.(의사봉, 회의록, 회의자료 등)
2	국민 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① 사회자가 진행
3	의장 인사	인사말(최근 학생들의 관심사, 중요한 학생회 일들, 학생회를 믿고 협조해 준 대의원(학생)들에 대한 감사 등)	① 의장은 중요한 보고 사항을 보고한다. ② 본 회의 시 핵심 사항을 알려주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③ 모든 대의원(학급 학생)이 의안 해결을 위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사말을 한다.
4	평가, 보고	지난 회 회의록 낭독, 의안 실천 결과보고, 각부보고, 기타보고 등	① 의장이 진행 ② 서기는 지난 ()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보고된 회의록은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 지난 회에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부서장 및 담당자는 반성을 포함하여 평가 차원의 보고를 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의 반성 및 평가, 보고까지를 포함하여 의장이 총평한다. ※ 바쁘면 의장이 간략히 구두 보고하거나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다수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5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안 보고 및 채택	① 학생회운영위원회, 대의원1/3 이상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 ② 학교에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의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③ 의원들로부터 의안 동의(同議)가 있으면 재청을 받아 채택 ④ 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제안자는 의안의 중요성과 의안과 관련된 실태, 바라는 바 등을 설명한다. 제안자는 찬성,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학교에서 제시한 의안일 경우 해당 학생회 부서장 혹은 의장이 제안 설명을 한다.</p> <p>⑤ 의안은 민주적 결정 방식에 의해 채택한다.</p> <p>⑥ 의안은 절실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 가능한 것을 채택한다.</p> <p>⑦ 의장은 회의 진행 미숙으로 동의(動議)되는 안건은 기타 토의나 건의 사항으로 돌린다.</p>
6	의안 심의	채택된 의안 심의	<p>① 의장이 의안을 상정(上程)한다.</p> <p>② 제1호 의안: ----- 하자. 제2호 의안 : -----, 등</p> <p>③ 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p> <p>④ 질의 및 응답을 한다.</p> <p>⑤ 의안을 충분히 토론한다.</p> <p>⑥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토론을 종결한다.</p> <p>⑦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의장 의사봉 3타)</p> <p>※ 의장은 가능한 한 모든 대의원이 충분히 의견을 드러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찬반 간에 평등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 부족으로 사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잠시 정회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리에 함께한 지도교사 선생님께 자문을 구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표결은 사안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거수, 기립, 비밀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p>
7	기타 토의	기타 사항을 토의	<p>① 본 회의 의안(議案)과 관련되지 않은, 시급히 토의할 사항을 처리한다.</p> <p>② 없으면 그대로 넘어간다.</p> <p>※ 대의원 1/3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된다.</p>
8	건의	건의 사항	<p>① 시급한 문제, 건의하여 해결될 사항을 다룬다.</p> <p>②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한다.</p>
9	회의록 낭독	보고 및 결의된 사항 낭독	① 서기는 회의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책임지며, 본 회의에서보고 되었거나 결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대의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
10	도움말	지도교사의 도움말	① 필요 시 지도교사는 회의 진행, 의사결정방법, 기타사항에 도움말을 할 수 있다.
11	교가(반가) 제창	제창	<p>① 교가 제창</p> <p>※교가는 일어서서 부르며, 반주음악이 있으면 더욱 좋다.</p>
12	폐회 선언	이상으로 제()회 학생대의원회(학급)를 마치겠습니다.	<p>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다. 의사봉 3타</p> <p>② 대의원(학급 학생) 모두 박수로 마친다.</p>

나. 실천 결과

(1) 반장, 부반장

학생회 간부들은 간부리더십 연수를 통해 지금까지 반장, 부반장으로서의 역할과 학생회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알고 수행함으로써 학급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 및 요구 사항을 학급 단위 및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학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 운영위원회(집행부) 간부들은 학생회 목적과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이 1년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인 학생대의원회를 통해 단위 학급 및 전교생들의 건의 및 의견 등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의결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와 협의, 결정함으로써 학급회와 학생대의원회 활동이야말로 학생들의 공식적인 민주적 의사소통 기구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간부수련회 활동

학생회 간부로서 가져야 할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고양함으로써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세를 기른다. 단체활동을 통하여 협동적인 교우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배움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기른다.

가. 실천 사례

(1) 간부수련회 준비 및 진행과정

20××년 12월에 학생회 회장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단은 집행부를 구성하여 현 집행부와 워크숍을 갖고 겨울방학 중 자체 모임을 통해 선거 공약 사항이 반영된 연간 학생회 활동계획(안)을 마련한다.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3월 초 구성된 학급대의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간부수련회에 대한 목적과 활동을 인식하고 학생회 집행부에서 제안한 여러 안건 등을 학급회를 통한 수렴 후 참여한다.

(2) 학생회 간부수련회 계획서

① 기간 : 20××. 03. 23(금) 13:30 ~ 03.24(토) 13:00 (1박 2일)

② 주요 토의 안건

- 2000학년도 00 학생회 주요 활동 계획
-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회 안 확정
- 교내체육대회, 00축제에 관한 학생회 안 확정

-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 1) 개인 이동 시 유의점
- 2) 수련 활동 시 유의점
- 3) 숙소에서의 유의점
- 4) 보건 위생

- 기타사항: 대중교통편 / 개인 준비물 / 방 배정표

③ 수련 일정 및 프로그램 - 참여 인원 (86명 명단 생략)

(3) 20×× 간부수련회 활동 사례

갈등해결조정자로서의 리더십 특강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갈등해결 / 간부수련회 활동에 임하는 대의원 / 집행부가 제시한 안건(2000년 00축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담당업무부장교사에 대한 참고발언 요청에 따른 학교 측 입장 설명 / 2000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열띤 공방 / 표결로 통과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대표, 교사대표 협의회 / 간부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 / 표결로 통과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대표, 교사대표 협의

나. 실천 결과

학생들은 간부수련회를 통한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사전에 반영하고 부서별로서도 학생회 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요구사항들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전교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1학년 간부학생은 간부수련회 준비와 참여를 통해 학급에서 학급자치회 및 대의원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 학습이 되었으며, 연간학생회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과 학생회와 학교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3. 정기적 학생대의원회 개최

학생대의원회는 학생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이 학급 내에서 제안되거나,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판단 할 때, 학생회장 등 집행부가 계획된 학생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 생활 중 학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한다.

가. 실천 사례

(1) 운영 방법 (본교 학생회 회칙 제3장 대의원회)

제17조 (구성)

- (1)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부 부장과 차장, 각 학급의 급장, 부급장, 전체동아리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단은 학생회장,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18조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계획의 심의
- (2)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생회 규정 개정 요구
-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장단의 운영 위원회 임원 지명에 대한 동의
- (6) 회장단 해임 또는 운영 위원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 (7)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과 전달
- (8) 학생회 운영 위원회 부서 통폐합, 신설, 업무 조정에 대한 동의
- (9)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9조 (회의)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월 1회(방학 중 제외) 정기적으로 개최(예정)하며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지도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회의 1주일이나 최소 3일 전에 안건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 (5) 학급 대의원은 사전에 학급회를 통해 안건에 관한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6)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지도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 학생회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지도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2) 학생대의원회 결과에 따른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 및 집행

- ① 학생대의원회 안건 결의 및 건의사항은 회의 끝에 서기의 ‘회의록 낭독’으로 확인
- ② 학생회 서기는 다음날까지 낭독된 내용을 학생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학생회장의 확인을 받음
- ③ 학생자치지원부장 및 교감선생님의 결재를 거친 후 학생회장단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자치지원부장(사안 해당 부장교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 ④ 학교장은 학생회 대표와 해당 부서 및 학교 행정적 설명을 듣고 즉시 시행조치, 단계적, 중장기적 시행조치, 학운위에서 결정, 수용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
- ⑤ 학생회 대표는 간담회 결정사항을 각 학급 대의원을 통해 공지

(3) 안건 결정에 따른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 및 집행, 개선 사례



제3차 대의원회 회의록

출석인원	서기	부의장	의장	회의장소
79명	서○○	신○○	김○○	3층 시청각실
회의일시	20○○. 6. 11		회의시간	19:00 ~ 21:00 (2시간)
토의안건	- 1호 의안 : 교복(하복), 체육복 디자인 변경 - 2호 의안 : 축제 준비 업무 분장			
제안설명	▶ 1호 의안 (제안자 : 박○○) 작년부터 체육복 재질이 좋지 않다는 의견과 교복 디자인을 바꿨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작년에 전교학생회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하지 못하여 이번에 상정			

	<p>▶ 2호 의안 (제안자 : 김○○) 올해는 이벤트 참여율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여율이 낮았던 프로그램은 없애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축제2일 공연 때 잦은 실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더 많은 리허설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p>
<p>토의내용</p>	<p>▶ 1호 의안 1-3반장: 교복 위 흰색 계통, 바지는 진한 베이지색과 칼라 대신 라운드로</p>
<p>토의내용</p>	<p>1-8반장: 교복넥타이는 리본으로, 치마주름은 체크무늬로, 밝은 색, 체육복은 도난 우려로 이름표를 박고, 여름체육복은 칼라티셔츠로, 겨울체육복은 트레이닝복 2-1반장: 교복은 현재 칙칙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셔츠주머니 2개로, 체육복은 땀 흡수가 잘되는 면으로, 팔에 고무줄을 없애며, 1학년과 보색대비를 하여 차이 두기를 원함. 2-8반장: 교복디자인이 바뀌더라도 개인적으로 수선을 한다면 변경되는 사항이 없을 것이다. 체육복은 학년별 구분을 위해 색을 확실히 구분하고,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름을 박는 것이 필요함. 3-1반장: 교복을 바꾼다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우리가 졸업을 하고나서, 뒤바뀐 교복으로 모교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 것 같다. 3-10반장: 체육복 상의를 하얀색으로. 체육복은 재질을 바꾸거나 가격을 낮춤</p> <p>▶ 2호 의안 - 전시 때 무용실 내부뿐만 아니라 밖도 꾸며 관심도 높이기 - 시청각실을 무대 크기에 맞추어 실전처럼 연습하기 - 반 공연은 지루하며 가요제는 같은 분야가 많으므로 댄스 랩 같은 색다른 공연준비 - 점수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업무분장 동아리 총책임자가 준비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함 - 건의사항 1학년도 축제 준비에 참여를 함 어떤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있으면 1,2,3학년 소통을 하여 철저히 준비</p>
<p>질의내용</p>	<p>축제의견 - 교실꾸미는 시간이 적어서 그전 날 야자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 1, 2학년은 9시에 야자를 마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함</p>
<p>결의내용</p>	<p>▶ 1호 의안</p> <p style="text-align: right;">찬 · 반</p>

	교복과 체육복 디자인변경은 찬반투표 결과로 둘 다 변경하는 것으로 통과 ▶ 2호 의안 축제 준비 업무 분장 시각자료와 제안설명, 토의 내용대로 통과	참석 대의원 79명 ▶ 교복(하복) 변경 찬성 : 36명 / 반대 : 32명 / 기권 : 11명 ▶ 체육복디자인변경 찬성 : 59명
건의·기타사항	① 화장실문고리 고치기 - 현재 고치고 있으며 6월 23일까지 완료한다고 함 (행정실) ② 월요일 HR시간과 수요일 CA시간 회의를 하고 CA활동하기 - 교무부와 담임선생님께 알려드렸음 ③ 화장실 휴지자판기 설치 (동 5층화장실) - 6월 23일까지 완료한다고 함 (문화부) ④ 6월13일 1, 2학년 모의고사로 3학년들 조용히 하기 - 지도하기로 함 (3학년부) ⑤ 방충망 설치 - 6월 16일, 17일 완료한다고 함 (행정실)	
	⑥ 매점 질서 지키기를 위해서 2학년 선도부원이 쉬는 시간과 점심, 저녁시간 매점 지키기 - 선도부가 활동하도록 전달함 (학생부) ⑦ 물 아껴 쓰기 - 조.중레 시간을 통해 교육하도록 함 (학년부) ⑧ 2학년 5,6,7반 먹는물 급식소에서 충분히 공급하기 -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함 (영양사)	

(4) 이웃학교 벤치마킹 사례

2000-0년 현재까지 부산, 경남 등 이웃 5개 교가 본교를 방문하여 학생대의원회 진행참관 및 학생회 활동 나눔 자리를 통해, 지도교사는 ‘학생회 연간 활동 계획 및 운영’에 관한 것들을 나누었으며, 대표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대의원회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학생들 간의 현장 학습이 되었다.

나. 실천 결과

- (1) 학생들은 정기적인 학생대의원회 개최와 결의된 사항들을 학교장과 책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진솔하게 대화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통하려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였다.
- (2) 학생들의 관심거리,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교칙에 반하거나,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외에는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단계적 대안제

시로 약속 이행함으로써 학교와 학생 간 오해와 편견,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없앴다

- (3)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최우선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타학교 학생보다 ○○인으로서의 애교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는 스승의 날 행사

‘스승과 제자가 하나’되는 행사를 통해 사제 간의 사랑과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겨 본다.

가. 실천 사례

우리 사회 시선은 갈수록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를 살리기보다 스승과 제자를 멀리하게 만드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 시선에 대한 문제해결의 본질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사랑과 존경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승과 제가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목적으로 학생자치지원부와 학생회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 (1)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한 학생 의견 수렴하기 위해 ‘스승의 날 행사준비’ 의안

제2차 대의원회를 2000.5.9(수)개최

(2) 스승의 날 행사 계획서

1. 일 시 : 2000년 5월 15일(화) 09:10~1200

2. 세부내용 :

시 간	내 용	세 부 내 용	장 소	비 고
09:10	방송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사도헌장 낭독-교감 선생님 · 학교장 말씀 · 꽃 달아 드리기 · 영상물 상영 	교실	학생부 진행, 각 학급 학생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감사합니다.’ - ‘애들아 사랑해!’ -학생대표 편지 낭송 -스승의 노래 제창 · 담임과의 시간(학급 자율) 		
10:00	체육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야구(여선생님과 여학생) -약 40분 소요 · 축구(남선생님과 남학생) -약 40분 소요 	운동장	학생부 및 학생회 진행
12:00	행사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반 종례 후 학생 귀가 		학년부

(3) 스승의 날 행사

나. 실천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무의미하고 괴롭다.’고 한 선생님도 학생들의 정성에 보답코자 열심히 뛰었다. 방송으로 진행된 교실 행사를 통해 담임은 교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는 고민도 덜었다. 비담임은 교무실에서 방송행사를 지켜보며 이때마다 느끼는 존재의 공허함도 없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공 하나로 학생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스승의 날 행사에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감사했다. 실내 방송 행사에서 선생님과 졸업생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과, 사제 간 운동경기를 통해 운동복 차림으로 함께 뛰고 즐길 수 있음에 뜻 깊은 행사로 생각했다.

5. 학생과 교사가 기획 운영하는 교내체육대회

학생과 교사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학부모도 함께하는 열린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

가. 실천 사례

교내체육대회 목적 및 운영 방법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대폭 바꾸었다. 남학생 위주의 경기(축구, 농구)와 남녀 학생 구분된 경기 종목(피구, 발야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 대신 전 경기 종목을 남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1) 교내체육대회 기획 및 추진과정

- ① 행사를 계획, 진행하는 학생회 체육부장은 집행부원들과 지난 해 교내 체육대회 평가 및 경험을 공유한다.
- ② 체육부장은 2010학년도 교내체육대회 종목, 경기운영, 응원, 관람질서 등에 대한 학생회 계획(안)을 마련하여 1차 대의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한다.
- ③ 안건 상정과 토론을 통해 일부 수정되기도 하며, 스스로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그 자리에 참석한 체육대회 담당 선생님께 참고발언을 요청하여 듣고 결정함으로써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안건이 매우 구체적이며 추진될 수 가능성을 높인다.
- ④ 의결사항을 통해 교내체육대회 때까지 업무 담당 선생님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남녀가 함께하는 경기 종목 : 2인3각, 단체줄넘기, 피구, 발야구, 손님모시기, 줄다리기, 낫다리 밟기, 릴레이 등

(3) 추점을 통해 짝반을 이룬 팀별 사례

팀 명	팀 명	학 반	비 고
1학년	일 구	1반,9반	남·여반
	아프리카 미키	3반, 4반	남·남반
	프리(free)	2반, 5반	남·남반
	친해지길 바래	6반, 10반	남·여반
	우린 어쩔 수 없나봐	7반, 8반	남·여반
2학년	청산가리	5반, 9반	남·여반
	호흡곤란	2반, 8반	남·여반
	돌+아이(I)	7반, 10반	남·여반
	게이들	6반, 3반	남·남반
	여 백	1반, 4반	남·남반

3학년	7전 8기	7반, 8반	남·여반
	거물과 대물	4반, 5반	남·남반
	거침없이 킁킁킁	6반, 10반	남·여반
	롯데 조리봉과 흰 우유	1반, 2반	남·남반
	최악의 커플	3반, 9반	남·여반

나. 실천 결과

결과적으로 남녀학생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전교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남학생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학생대의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과,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목적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선 결과 다수의 남학생들이 동의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체육대회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회와 담당 업무교사의 부담이었다.

- (1)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정해지는 짝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사전에 서로 만나 짝반T셔츠 디자인, 응원 연습, 경기 작전 짜기 등 타인의 생각과 취향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이 두드러졌다.
- (2) 남녀학생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종목 선택이 가능함으로 인해 체육대회야말로 남녀학생이 가장 친밀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6. 선거 공영제를 통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본교 학생회정·부회장 선거는 학생회 회칙의 목적²⁾에 따라 선거 비용³⁾과 선거 운동⁴⁾을 명시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며, 공명선거협약서 작성과 입후보자 설명회 및 학교장과 입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입후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2) 제1조 (목적) 이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체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V.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정 제6조 (선거 비용) 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지출한다.
 - 4) 제9조 (선거 운동)
 - (2) 선거 운동 비용은 학생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실천 사례

- (1)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은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요소이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본교는 2006학년도부터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정을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개정⁵⁾하여 피선거권자의 제한규정을 대부분 없앴다.
- (2)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을 학교예산에서 책정, 집행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였다.
- (3) 입후보자 선거교육뿐만 아니라 학급선거관리위원에게 선거의 의미와 진행과정 그리고 투표(온라인 컴퓨터 투표)방법을 교육하였다.
- (4) 선거공고문, 입후보자 등록원서, 공명선거협약서

입후보자 공명선거 협약서 작성 / 선거관리위원 선거사무안내 / 교장선생님과 입후보자 간담회 / 교장선생님과 공명선거 다짐 / 개성을 맘껏 발휘한 선거벽보 / 등굣길 교문 앞 선거유세 열전 3일 / 교실에서 유권자와 질의응답 / 위풍당당 선거유세 - 작은고추가 맵다 / 전자투표 실시 / 당선자 축하 / 전.입후보자 축하 격려의 장

나. 실천 결과

- (1)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학생인권신장’ 차원에서 개정한 결과 다양한 능력을 지닌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 (2) 입후보자는 학교 예산에서 균등하게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쓰임(선거벽보 및 홍보물 제작 등), 입후보자 공명선거 협약서 작성, 학교장과 함께한 클린 학생선거운동 약속 등을 통해 선거공영제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 (3) 선거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것 이외에 선거관리위원 및 유권자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이 되었다.

7. 학생회 신·구 집행부 워크숍

학생회 활동은 1년 단위로 끝이 나며, 인성부(학생부)의 계획이나 지도방침

5) 제2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일 1년 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생회가 주축이 되는 학생자치활동은 영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치활동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생회 자치활동의 영속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구학생회 회장단이 함께 모여 1년 동안 수행한 평가, 조언, 업무 인계를 함으로써, 새 집행부에게 참신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학생회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현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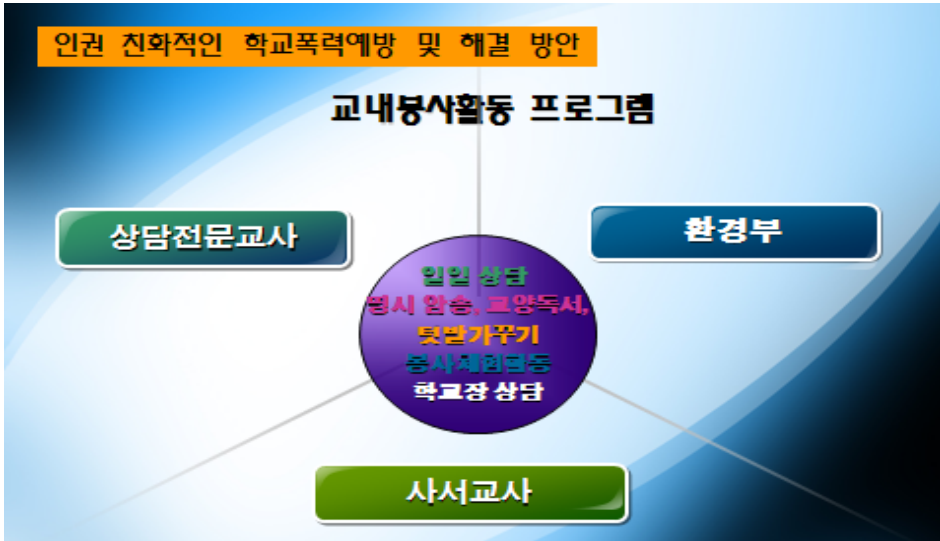
가. 실천 사례: 워크숍 주요 진행 내용

- (1) 2006학년도 학생회 주요활동 부서별 업무 보고
- (2) 잘된 사업, 부족했던 사업, 잘못된 사업,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보고
- (3) 2007학년도 학생회장단 선거공약 및 학생회 활동 구상 발표
- (4) 간담회

나. 실천 결과

- (1)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단위학교 특색에 맞는 발전적인 학생자치활동의 맥을 이을 수 있었다.
- (2) 해당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현 집행부는 차기집행부에게 조언할 수 있으면서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 지역 학생회 모임 및 행사에서 학생자치활동 사례를 홍보하고 조언해 줌으로써 지역 학생회 활동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었다.
- (4) 학생회 업무부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활동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다음해 학생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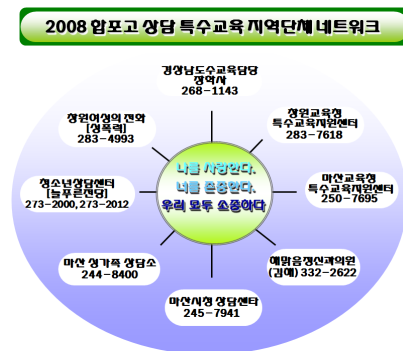
8.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징계절차와 프로그램



9. 이웃과 연계된 지역사회네트워크

단위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학교폭력과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은 도움과 치료 대상이 적합한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조직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학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예방·치료·상담



Ⅲ. 마치면서

학창시절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소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 지금까지 권위주의의 과도한 입시교육 속에서 운영되어 오던 획일적인 상명하달식 학교 운영의 틀을 무너뜨리는 힘-인권교육의 부작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물론 ‘참된 인간의 품성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개인의 책임을 중시한 교육, 한 사회가 수용을 요구하는 개인 품성에 대한 교육, 사회순응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면, ‘인권교육’은 개인(사회)의 권리와 책임을 같이 요구하며, 한 사회에서 수용되기보다 ‘인권적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변화지향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에게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전달이 아닌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지금 우리 세대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교사가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을 학생들과 함께 인권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은 내 마음 속 톨레랑스(Tolérance)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앵톨레랑스(Intolerance)의 영역을 줄여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같이 참여하고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한 인권환경지표 만들기(안) >

1. 인권보호 환경

- 1-1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 기회를 주는가?
- 1-2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는가?
- 1-3 교원이 학생에게 체벌할 경우 체벌규정에 따라 하는가?(체벌을 행하는 학교)
- 1-4 교원의 부당한 체벌(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가?
- 1-5 징계 학생에 대한 교내외 인성·인권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는가?
- 1-6 징계학생의 이름과 징계내용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되고 있는가?
- 1-7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가?
- 1-8 집단적 생활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1-9 복장지도 및 생활검열에 상급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 1-10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프로그램 및 시설 포함)?
- 1-11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교육, 프로그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12 임신, 출산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1-13 시험 등수 결과를 학교 게시판 혹은 교실이나 복도에 공개하는가?
- 1-14 학생회 임원 입후보 자격 등 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 있는가?
- 1-15 성적을 통해 우열반편성을 하고 있는가?
- 1-16 남녀공학(초등 포함)에 있어서 성차별이 있는가(출석부에 남학생 우선 배치 등)?

2. 인권 권리 환경

- 2-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규칙 전반에 대한 안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2 상담교사와 자유로운 상담 및 비밀이 보장되고 있는가?
- 2-3 인권침해 시 신고와 조사, 조치에 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 2-4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5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6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7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8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2-9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2-10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2-11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3. 참여권 환경

- 3-1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 학급회 등)에 따른 기획,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3-2 학생과 직접 관련된 의제에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 3-3 학생회 활동이 지역 학교(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3-4 학교운영(복지, 문화, 자치활동, 선택적 교과 및 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가?
- 3-5 교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가?
- 3-6 그린마일리지제 실행 여부, 상벌점 조항 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실행 학교)
- 3-7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 누구나 교칙 등 학교의 모든 규칙을 볼 수 있는가?
- 3-8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 기준이 있는가?

4. 사생활권 환경

- 4-1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하고 있는가?
- 4-2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규칙을 만들어 사용토록하고 있는가?

- 4-3 일기장, 다이어리, 개인 학습장 등을 열람하고 있는가?
- 4-4 단체급식 비희망 학생(개인 도시락, 대체 식사)를 배려한 장소(아침 포함)가 제공되고 있는가?
- 4-5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4-6 예고 없는 개인소지품 검사 시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가?

5. 자기 결정권(사생활의 자유) 환경

- 5-1 교복에 이름표가 탈부착 가능한가?
- 5-2 머리 모양(두발의 길이 등), 양말, 책가방의 모양과 색상, 신발, 머리핀 등 ‘학생생활복장 등의 수칙’ 개정에 학생회 의사가 반영되는가?
- 5-3 종교생활에 자기 결정권이 있거나 대체활동이 가능한가?

6. 문화 환경

- 6-1 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생회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6-2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등 문화행사 계획 시 학생회의 예산요구 및 편성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6-2 학교 밖 문화행사에 자유롭게(일과 중 제외) 참여할 수 있는가?
- 6-3 학생 수를 고려한 휴식 공간(학생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는가?
- 6-4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온수 사용가능한가?
- 6-5 체육관에 남아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7. 생활 환경

- 7-1 남녀탈의실이 갖추어져 있는가?
- 7-2 개인 사물함의 크기가 적당한가?
- 7-3 교복(체육복)디자인 변경에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가?
- 7-4 급식소 공간(규모)는 적당한가?
- 7-5 식사 시간은 충분한가(식사 후 수업 전까지의 휴식시간)?
- 7-6 식사 전 손을 씻고 말리는 곳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7-7 월별 식단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 7-8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고 시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7-9 학교 기숙사 이용 선택 기준이 성적 중심인가?(기숙학교일 경우)
- 7-10 교실의 냉난방 시설 사용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 7-11 갖추어진 학습기자재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8. 보건 환경

- 8-1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 8-2 보건실 이용에 불편하다면 무엇인가(위치,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
- 8-3 보건실 환경이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9. 안전 환경

- 9-1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시행 규칙'을 숙지하고 있는가?
- 9-2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시행 규칙'에 따른 이용법을 알렸는가?
- 9-3 학교 주변 위험(교통 등) 지역에 대해 안전시설 및 위험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가?
- 9-4 학교안전교육 이루어지고 있는가?
- 9-5 학교 내 주차장과 운동장 구분이 명확하고 지정된 차량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 9-6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시 먼저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는 안내 및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9-7 응급환자 발생 시 교직원 행동지침을 교육 받았는가?
- 9-8 재난대비훈련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 9-9 계단 등 위험한 곳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가?
- 9-10 계단이 가파르거나 미끄럽지 않은가?
- 9-11 야간에 교문 등 학교 주변이 어둡지 않은가?

10. 건강 환경

- 10-1 각 실의 조도(lux)가 학생과 교사가 이용하는데 알맞은가?
- 10-2 교실 남쪽 창가 커튼이 햇빛을 가리기에 충분한가?
- 10-3 외부 소음으로 인해 수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
- 10-4 각 실 인버터 냉난방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0-5 학습 중 교실 인버터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 설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 10-6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헬스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10-7 학교음용수 기준(끓여서 식힌 물)에 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가?
- 10-7 화장실(실외 창문 등) 청소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2010 동계(통산 8차) 정기 학술 발표회 자료집
실질적인 학교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과 실천 전략

2010년 12월 18일 인쇄

2010년 12월 18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발행자 / 허 중 털

편집인 / 이 대 성, 김 상 돈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lawedu2008@paran.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가람문화사

Tel: 02-873-2362
